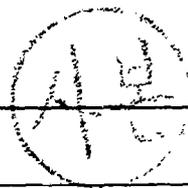


기안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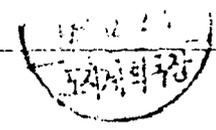
(전화: 741-6752)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개3026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법무담당관 심사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시행일자	'91.12.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협 조 기 관	문 서 종 제	
	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계장			
기안책임자	한선의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의	시 장	
제목	서울 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1 안) 내부결재				
1. 토개공 수택(경인개)1922-11091호('91.12.14)및 동대호 -11302호('91.12.19)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 719호('91.11.2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되고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중계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하고, '91년 말까지 일괄 승인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우선 사업기간만 연장 조치토록 요청하였기				
3. 별안과 같이 우선 시행기간만 변경승인하고, 기타사항은 관련부서 사전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별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 사업시행기간 (변경) 60				

. 기정 : 1988.8.16 - 1991.12.31
. 변경 : 1988.8.16 - 1992. 6.30
(연장사유) 토지이용계획 일부변경 및 확장측량 추가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 기간 소요. 끝.
(제 2 안)
수 신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제 목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수탁(경인개)1922-11091호('91.12.14)및 동대호 -11302호('91.12.19)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위 대호로 신청한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 승인하니, 동 기간내에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업시행 기간 (변경)
. 기정 : 1988.8.16 - 1991. 12. 31
. 변경 : 1988.8.16 - 1992. 6. 30 끝.
(제 3 안)

수 신 건설부장관
참 조 택지개발과장
제 목 서울중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보고
1. 건설부고시 제719호('91.11.20)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중계 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서울중계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1부. 끝.
(제 4 안)
수 신 노원구청장
참 조 도시정비과장
제 목 서울중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통보
1. 건설부고시 제719호('91.11.2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된 서울중계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신청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첨부 1. 서울중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서 1부. 끝.
2.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5 안)

수 신 공보관

발신 : 과 장

제 목 시보 게재 의뢰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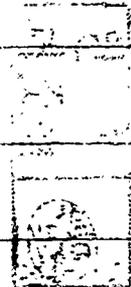
가. 시보게재 구분 : 고 시

결재

나. 게재 건명 :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다. 법적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고 시 문

시정	제 361
담당자	김부담담당
비	구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1 - 369 호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부고시 제 719 호('91.11.20)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 중계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 하였기, 동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12.

서울특별시장

다 음

○ 사업 시행 기간 (변경)

· 기정 : 1988. 8. 16 - 1991. 12. 31

· 변경 : 1988. 8. 16 - 1992. 6. 30

